

[별표 10]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배점	평점
①수출실적 ◆ 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하나만 인정) 가. 신청업체의 최근 5년(접수마감일 전월 기준)간 수출 총액 a. 신청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으로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의 경우 7만불 이상 b. 신청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으로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1회 이상인 신청업체의 경우 10만불 이상 c .a, b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30만불 이상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단, C등급 제외)	(1점)	
② 기술·품질 인증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div>Q마크,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재난안전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발명품, 기술등급평가(T3이상),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div>	(1점)	
③기술개발 정책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div>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협력이익 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제품(최근5년)</div>	(1점)	
④ 창업·혁신형 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하나만 인정) <div>벤처기업,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모든 기업 대상으로 인정</div> <div>창업기업(3년 초과~7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에 대해 인정</div> <div>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에 대해 인정</div>	(0.5점) (1점)	
⑤ 사회적 책임(ESG)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div>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div> <div>※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에 대해 인정</div>	(1점)	

<div>탄소중립</div> <div>- 녹색기술인증</div> <div>- 저탄소제품 인증</div> <div>- 탄소중립 관련 정부사업 참여한 내역이 있는 경우(단, 중도 포기 등은 인정되지 않음)</div> <div>-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고시된 공공기관</div> <div>저출산 대응</div> <div>- 가족친화인증기업</div> <div>- 일·생활균형 우수기업</div>		
⑥ 조달업무 유공업체 또는 공공조달관리사 취득자 고용업체 -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 지정신청마감일 전월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신청업체에 재직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고용보험가입 서류) 반드시 제출	(최대 1점) (건당 0.5점, 최대 1점) (0.5점)	
소 계(최대 3점)	(3점)	
II. 감점항목	배점	평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9조제2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점)	
⑧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점)	
⑨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5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I. 합계 (I+II)	최대3점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②, 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세부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단, ‘기술등급평가(T3이상)’은 인증서에 세부품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함. 동일 품명이라 하더라도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 개수를 세부품명의 개수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배점(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한다)

2. ①②③④⑤⑥의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각 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준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받은 것(완료일 기준)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

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4. 협업체로 신청할 경우 신인도 평가 대상은 추진기업으로 한다.

5. 심사특례(저작권 등록된 SW제품, 혁신제품, 연구개발제품)로 신청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대상이 아님

6. ⑤사회적책임(ESG) 심사항목 중 ‘저탄소제품 인증’, ‘저출산 대응’ 신인도 가점은 ‘26년 1회차 심사부터 적용한다.

7. ⑥공공조달관리사 취득자 보유업체 심사항목의 신인도 가점은 ‘27.1회차 심사부터 적용한다.

- | |
|---|
| <p>※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p> <p>※ 산업융합 품목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제품</p> <p>※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로 평가</p> <p>※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로 평가</p> <p>※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p> <p>※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택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7호에 해당하는 제품 (단, 해당 규정이 일몰되어 해당 제품이 '21.12.31 기준 유효기간('24.12.31.)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p> <p>※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제품</p> <p>※ 벤처나라 등록제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p> <p>※ 협력이익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 「협력이익공유 확인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로부터 과제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술개발제품</p> <p>※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p> <p>※ 재난안전제품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p> <p>※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p> <p>※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p> |
|---|